

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9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계약기간

- 1)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한다.
- 2)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. 다만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- 나.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.
 - 다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.
- 3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1)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,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(서비스)를 이용한다.

- 2) 1, 2등급 : 재가 및 시설급여 / 3, 4, 5등급 : 재가급여
- 3)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(한도액)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 -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 -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의 관련 기준을 따른다.

제20조 (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)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보호자는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.
- 2. 보호자는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- 3. 보호자는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4. 보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5. 보호자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
제21조(계약의 해제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4. 수급자가 입원을 하였을 때.

- ②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.